

보도자료

2010년 6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 과장(☎750-2430)
지상파방송정책과 홍사찬 사무관(☎750-2434) schong@kcc.go.kr

방통위, 방송사 재허가 심사시 공적책임 심사 강화키로

- 2010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년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방통위 출범이후 DTV 방송국 등 일부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었으나 3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한 대규모 재허가 심사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년도 재허가 기본계획에서는 방송법의 근간이 되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시청자 권익보장과 지역적·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 지역 사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평가와의 중복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사항목과 배점을 구성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2012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대비하여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실적과 계획에 대한 심사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허가 심사시에 이루어지는 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수렴을 각 방송국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하여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시청자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방통위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말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후, 재허가 백서를 통해 심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TV와 라디오 등 방송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재허가 심사가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0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 요약

< 붙임 >

2010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 요약

□ 재허가 대상 : 43개 사업자, 330개 방송국

○ 201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 총 42개 사업자, 328개 방송국

○ 2010년 12월 6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 OBS 경인TV(주), 2개 방송국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9)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평가위원(1)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1)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영·회계분야(1)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지표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계 량	400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계 량	감점
3. 기타 재허가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50점
4.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비계량	150점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비계량	50점
6. 경영의 적정성	비계량	50점
7.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50점
8. 방송발전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비계량	50점
9. 시청자 권익보호	비계량	75점
10.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기여	비계량	75점
11. 디지털전환 추진실적 및 계획, 경영자의 조직관리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비계량	50점
계		1,000점

※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 심사 후 심사 결과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 예정

※ 비계량 지표의 세부심사항목에는 계량평가요소 포함, 특히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관련 세부심사항목은 방송법 제5조와 6조를 반영하여 계량적 평가요소 강화

□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추진계획

- '10. 6월 : 재허가신청서 접수
- '10. 7~10월 : 시청자 의견 접수,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10. 11월 : 재허가 의결